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96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동물화장시설 등 설치·조성 시 주민지원 기금 설치·운영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24.

3. 회 부 일 :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확충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와 불편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주민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공공이 주도하는 동물장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경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소재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주민 지원 사항을 협력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설치·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Ⅲ. 검토의견

1. 동물화장시설 등 설치·조성 시 주민지원 기금 설치·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시설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⑦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함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금 설치 및 주민 지원 사항을 협력할 수 있다.</u>

현행법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¹⁾, 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생활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시설 소재지 주민의 우려를 완화·조정하기 위한 재정적·제도적 수단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동물화장 시설 등 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발생하는 경우²⁾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주민지원이 일회적·임의적 방식에 그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 목적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을 중·장기적으로 조성·운용함으로써 장묘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부담을

1)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헤럴드경제, 「우리 동네 반려견 화장장 안돼!…반려견 추모공원 돌발 변수」, 2025.9.13.

- 동물화장시설이 포함된 반려동물 추모공원 조성 과정에서 시설 소재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생활 여건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에 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완화하고 주민 지원을 보다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시설의 설치 주체와 실제 영향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를 고려하여,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설의 영향 범위를 반영한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협력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음.

다만, 주민 지원의 내용을 기금 설치·운영에 한정하기보다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 복지·편익시설 확충, 소득증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그 내용상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책무를 규정한 제4조보다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조항(제71조)에 위치시키는 것이 조문 체계상 보다 적절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장묘업 활성화 및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같은 법 제71조3)에서 지방자치단

-
- 3)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체의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하는 방향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동물장묘업 개요

◆ **동물장묘업**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 동물장묘업 현황

- 「동물보호법」상 허가 영업으로 '**동물장묘업**' 규정, 세부적으로 **장례식장, 화장시설, 건조장시설, 수분해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구분

< 동물장묘업 허가 현황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동물장묘업(개소)	57	63	68	74	83

□ 동물장묘업 허가

-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아야 함**

□ 동물장묘업 종류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보관하는 시설

□ 동물장묘업의 설치 제한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 * 녹지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참고2

동물장묘업 운용 현황

□ 동물장묘업 운영 현황 : 총 83개 업체('24.12.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장묘업	57	63	68	74	83
증감(전년 대비)	-	↑ 10.5	↑ 7.9	↑ 8.8	↑ 12.2

□ 업체 목록

연번	시도	시군구	업체명	연번	시도	시군구	업체명
1	서울(1)	마포	펫문	45	강원(3)	강릉시	강릉펫사랑
2	부산(3)	기장군	파트라슈	46		원주시	주식회사 패투헤븐
3		기장군	아이별	47		횡성군	펫 메모리얼
4	대구(2)	기장군	센터럴파크㈜	48	충북(5)	청주시	주식회사 펫로스엔젤
5		달서구	대구러브펫	49		청주시	㈜우바스
6		군위군	리틀포즈 반려동물 장례식장	50		제천시	굿파이펫
7	인천(2)	서구	㈜더 포에버	51		옥천군	대전이별공간
8		서구	어게인	52		영동군	스마일어게인
9	광주(1)	광산구	㈜하늘펫	53	충남(4)	천안시	21그램
10	울산(2)	울주군	이별공간	54		공주시	㈜좋은친구들
11		북구	젠틀펫	55		논산시	리멤버파크
12	세종(2)	세종시	펫포유	56		예산군	위드엔젤
13		세종시	포포즈 반려동물 장례식장 세종점	57	전북(6)	임실군	오수 펫 추모공원 * 공설 동물장묘시설
14	경기(31)	용인시	리멤버	58		군산시	서래안 펫타운
15		용인시	씨엘로펫	59		남원시	펫바라기
16		고양시	펫바라기	60		완주군	전주 하늘
17		화성시	㈜포이리스	61		완주군	해피펫
18		화성시	포포즈 반려동물장례식장 화성점	62		전주시	전주 아리움
19		화성시	펫오케스트라 반려동물장례식장	63	전남(4)	목포시	해늘마루
20		화성시	스토리펫	64		여주시	펫 메모리얼 파크
21		남양주시	몽몽이애프	65		함평군	타임투반려동물장례문화원
22		남양주시	21그램 반려동물 장례식장 남양주점	66		순천시	순천 반려동물장례식장 하늘별
23		남양주시	펫포레스트 반려동물장례식장 남양주점	67	경북(8)	경산시	아이들랜드
24		안산시	주식회사 펫콤	68		경산시	㈜젠틀펫
25		안산시	펫콤 안산점	69		칠곡군	스윗드림 펫
26		안산시	펫브릿지	70		문경시	㈜젠틀펫
27		파주시	페어웰	71		청도군	하얀민들레
28		김포시	엔젤스톤	72		성주군	강아지 펫 헤븐
29		김포시	포포즈	73		김천시	경북반려동물장례식장
30		김포시	마스코따휴	74	경남(9)	구미시	㈜한별소울펫
31		김포시	아이드림펫	75		창원시	한별반려 동물장례식장
32		김포시	펫포레스트	76		김해시	아이헤븐
33		광주시	21그램 반려동물장례식장	77		김해시	포포즈반려동물장례식장 부산점
34		광주시	러브펫	78		김해시	별이되다
35		광주시	포포즈 반려동물 장례식장 경기광주점	79		김해시	펫로스케어
36		광주시	㈜펫포레스트	80		양산시	메리온
37		광주시	(주)해피엔딩	81		양산시	㈜펫노블레스
38		광주시	백꽃사랑하이빛	82		함안군	한별리멤버파크
39		광주시	하늘강아지	83		고성군	하늘소풍
40		양주시	포포즈 반려동물장례식장 양주점				
41		이천시	㈜아리아펫				
42		안성시	안성펫문화원				
43		포천시	스타펫				
44		양평군	ROYHILLS				

